

화산동 2025-37호

#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)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25. 8. 29.

화 산 동 장



1. 공고기간 : 2025. 8. 29. ~ 2025. 9. 30.
2. 공고 대상자 및 사유

연번	대상자 성명	생년월일	발급기간	공고사유
1	김*연	2008.8.8.	2025.9.1.~2026.8.31.	폐문부재
2	김*리	2008.8.15.	2025.9.1.~2026.8.31.	폐문부재
3	홍*은	2008.8.11.	2025.9.1.~2026.8.31.	폐문부재
4	이*진	2008.8.5.	2025.9.1.~2026.8.31.	폐문부재
5	이*학	2008.8.26.	2025.9.1.~2026.8.31.	폐문부재
6	이*렬	2008.8.22.	2025.9.1.~2026.8.31.	폐문부재
7	최*비	2008.8.23.	2025.9.1.~2026.8.31.	폐문부재
8	박*현	2008.8.12.	2025.9.1.~2026.8.31.	폐문부재

### 3. 안내

- 가.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발급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고하오니, 사진 1매 (6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가로 3.5cm×4.5cm 탈모상반신 사진)를 지참하고 발급기간 안에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소명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산동 주민등록 담당(☎031-5189-460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 40조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